

※ → 성폭력은 성적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접촉으로 강간 뿐 아니라 강간미수, 성추행, 성희롱, 성기노출, 음란전화 등 모든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다.

※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정신적 학대나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, 유기 등을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,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
※ 시설폭력은 시설 내에서의 힘이 없는 약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정신적 학대나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등을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,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
※ 지역사회내 폭력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, 정신적 폭력으로 무관심, 왕따, 성매매,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다.

※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국가에 의해 방조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,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.

< 폭 력 > 개념

□ 기본방향

- 장애인들은 성적 착취와 학대, 가정 안팎의 폭력, 시설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폭력, 국가 기관에 의한 폭력 등 각종 폭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기존의 관련법과 사회시스템속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차별금지법안에 담아야 한다.
-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, 가정폭력, 시설폭력, 지역사회내 폭력, 공권력에 의한 폭력 등 사적 또는 공적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폭력문제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.

제 1조 (정 의)

- ①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접촉으로 강간 뿐 아니라 강간미수, 성추행, 성희롱, 성기노출, 음란전화 등 모든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다.
- ②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정신적 학대나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, 유기 등을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,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시설폭력이라 함은 생활시설내에서 힘이 없는 약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정신적 학대나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등을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,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지역사회내 폭력이라 함은 교육기관, 직장내 및 그 외 기관 등 지역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, 정신적 폭력으로 무관심, 왕따, 성매매,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다.
- ⑤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 함은 국가에 의해 방조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,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.

※ 성폭력 - 성폭력특별법, 남녀고용평등법,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을 참조하고 언어적·정신적 폭력,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을 추가함.

가정폭력 - 가정폭력방지법을 참조하고 정신적 학대, 언어폭력, 방임, 유기 등의 개념을 추가함.

시설폭력 - 가정폭력의 개념을 시설폭력으로 확대함.

지역사회내 폭력 - 제 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(여성에 대한폭력 부분) 참조하고 무관심, 왕따 등의 개념을 추가함.

공권력에 의한 폭력 - 제 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참조

제 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(자유로울?) 권리

- ① 장애인 등은 성별, 장애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성·가정·시설·지역사회·공권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개인, 가족, 지역사회, 시설, 국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은 장애인 등에 가해지는 폭력이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인권 침해임을 인식하고,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견되면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예방,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제 3조 폭력의 유형 및 폭력금지

(※ 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유형화하고 폭력금지조항에 담아 냄)

① 장애인 성폭력에는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.

1. 강간 -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력이 동반되는 경우,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포함. (강간)

(예 : 정신지체여성이 먹을 것, 돈 또는 친분관계로 유인돼 강간 당함)

2. 성추행 -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포함

(예 : 시각장애여성이 친분관계로 유인돼 성추행 당함)

3. 성희롱

4. 성기노출

5. 언어폭력

6. 음란전화

7. 사이버 성폭력

8. 혼인빙자 간음 (빙자간음, 간음, 혼인빙자간음)

9. 기 타

② 장애인 가정폭력에는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.

1. 신체적(물리적) 폭력

2. 정신적(심리적) 폭력

3. 언어폭력

4. 경제적 갈취 ⇒ 약취

5. 방 입

6. 유 기

7. 기 타

③ 장애인 시설폭력에는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.

1. 신체적(물리적) 폭력

2. 정신적(심리적) 폭력

3. 언어폭력

4. 경제적 갈취

5. 방 입

6. 유 기

7. 기 타

④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폭력에는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.

1. 신체적(물리적) 폭력

2. 정신적(심리적) 폭력

3. 무관심

4. 왕따

5. 성매매

6. 인신매매

7. 기 타

⑤ 장애인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는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.

(2019. 10. 29. - 2020. 1. 1.)

1. 신체적(물리적) 폭력

2. 정신적(심리적) 폭력

3. 언어폭력

4. 기 타

제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, 시설, 직장, 지역사회 등 관련기관을 관리,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, 장애인 등이 폭력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해당 시설(장)이나 기관(창)에게 즉시 시정 명령하여야 한다.

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폭력근절을 위한 법적, 의료적, 행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.

※ 관련기관(학교, 시설 등)의 사회적 책임 및 폭력금지조항 추가